

# 학 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김포대학(이하 ‘본 대학’이라한다.)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직업교육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본 대학은 김포대학이라 한다.

제4조 (위치) 본 대학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번지에 위치한다.

제5조 (설치 학과 및 입학 정원) ①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설치학과	주간	설치학과	주간
정보통신	100	호텔조리	120
유비쿼터스IT	90	호텔외식산업	80
*인터넷정보	70	*유아교육	32
*멀티미디어	70	사회복지	120
보건환경	60	*보건행정	37
건설토목	40	경찰행정	40
*항공전기전자	40	아동보육	60
세무회계정보	80	*실내건축디자인	70
경영정보	70	패션디자인	60
부동산경영	50	시각디자인	60
*e-비즈니스	65	영상미디어	60
관광영어	70	공연예술	60
관광경영	60		
계		1,664명	

(설치학과 앞의 “\*”표시는 3년제 학과 임.)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별표2〕로 정한다.

## 제2장 직 제

제7조 ①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계약제전임교수로 구분하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시간강사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자.

제8조 (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9조 (조직) ①본 대학에는 기획실, 교무처, 학생홍보처, 산학협력처, 총무처외에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을 두며, 각 처 및 협력단에 필요한 부서를 추가로 둘 수 있다.(개정 2004.3.1)

②각 처(실)에는 처(실)장을 보하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하며, 처(실)장 및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처(실) 및 협력단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각 처(실)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단의 정관에 의한다.

### 제3장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제10조 (수업연한) ①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 3년으로 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①항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산업체 받은 일반학과와 수업연한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2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학기) ①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 또는 실습학기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매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④수업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1년 4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다 학기 제도의 응용으로 과목별 강의 기간을 조정, 8주 종강 또는 15주 종강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5조 (휴업일) ①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3월27일)

2. 일요일

3. 법정공휴일

②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은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총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 제5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6조 (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8조 (입학지원절차 및 전형) ①입학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신 입학 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9조 (입학관련위원회) 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입학허가) 입학 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단, 정원 외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전형은 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산업체위탁생) ①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 (2중 학적의 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 제23조 (편입학) ①전문대학 및 대학 1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초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군복무 중 폐과된 학과의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 ②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열 학과에 한하여 허가한다.
- 제24조 (전과) ①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 ③전과의 과별 입학 및 전출 정원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
- ⑤전과한 자는 전출 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⑥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 ⑦유아교육과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재입학) ①신입생 모집 종료이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적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폐과된 경우 교육과정 심의회의를 거쳐 유사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 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26조 (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
- ③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점당 등록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④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⑤학점당 등록금제에 대한 필요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6조의 1(폐과)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폐과할 수 있다.
- ① 신입생 모집이 총장이 정한 기준에 2개년도 연속 미달할 경우 (산업체위탁생 제외)
- ② 편제정원(정원내)대비 재학생 총원율이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 ③ 당해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 ④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 조정 계획에 포함될 경우
- ⑤ 단, ①,②,③항의 기준은 '구조조정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장이 정한다

## 제6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27조 (휴학) ①질병, 병역 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단,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산업체위탁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1회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과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8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제적) ①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이를 제적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삭제
  4.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②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30조 (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 기준과 전공교과 실습·실습비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현장실습 의무 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교과로 두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학점이수) ①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한다(3년제는 120학점) 다만, 교양교과, 전공교과의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단, 사회봉사 및 멘토링 교과목 학점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학점인정) ①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와 실습(인턴쉽 등) 등은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인정범위와 절차, 요건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하로 한다. 단, 사정이 있어 6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2002. 12. 2 개정)

④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입학 한 자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일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의 학점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삭제

제33조 (수업)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③강좌는 08:00부터 22: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집중수업) ①계절학기 등은 14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전임교원,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8조 (출석인정) ①학생의 질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장 성적 평가 및 졸업

제39조 (평가시험) ①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40조 (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출석 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sup>0</sup>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 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sup>+</sup>	100 - 95	4.5
A <sup>0</sup>	94 - 90	4.0
B <sup>+</sup>	89 - 85	3.5
B <sup>0</sup>	84 - 80	3.0
C <sup>+</sup>	79 - 75	2.5
C <sup>0</sup>	74 - 70	2.0
D <sup>+</sup>	69 - 65	1.5
D <sup>0</sup>	64 - 60	1.0
F	59 이하	0
P		불계

- ③추가시험 성적은 B<sup>+</sup>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성적배점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상대평가를 시행하는 교양과목의 경우 등급 기준으로만 성적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1조 (진급 조건) 상위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2조 (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 제43조 (학사 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4조 (졸업 및 수료)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호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②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 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 ③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④대학은 필요한 경우 부 전공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장 평생교육

- 제45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연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6조 (공개강좌) ①본 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7조 (전공심화과정) ①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전공 심화과정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②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 (시간제 등록제 운영) ①본 대학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운영할 수 있다.

②시간제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단 본 대학 재학생의 시간제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시간제 등록생 선발 인원은 당해 연도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는 제외하며, 당해 연도 개설학과 선발여부는 조정할 수 있다.

④시간제 등록생의 학기당 신청학점은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기타 시간제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 (학점은행제)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50학점(3학년제 6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등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 2 (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15학점(3년제 21학점)이상, 전공 45학점(3년제 54학점)이상, 총 80학점(3년제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2년제 50학점, 3년제 65학점 이상인 자(4년제 과정은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위수여요건을 적용함)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한 학급과정 이수 및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학점 이상인 자,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교육과정 이수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부설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에 의한 평가인정 받은 기관을 통해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③ 제①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의 3 (학위수여)

① 제48조 제2항의 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진흥원 심의를 거쳐 시간제 등록생 운영세칙의 별지 1호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대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과 본교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준용한다.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 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유사성 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유아교육과 전공, 학점은행제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9조의 4 (학위수여 절차)

- ① 본교 총장명의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생은 전문학사학위 신청서에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생교육원장은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신청서를 접수 한 후,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위수여 21일 전에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비정규 특별과정)①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0조의 2 (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의 수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의 3(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육, 해, 공) 복무 중 취득한 학점에 대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 학점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교과목은 육군, 해군, 공군별로 정해진 군 훈련 평가인정 학습과목명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해당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일치여부를 학과에서 확인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학점은행제))에서 심의를 한다.
- ③ 학점인정은 병과별 1개 과목 최대 3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 제10장 학생활동

제51조 (학생회 조직) ①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중지된다.

제52조 (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학생 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학생 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 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55조 (학생 지도) ①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장학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 (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56조의 2 (장애학생지원) 장애인 교육분야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7조 (간행물 발행)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처벌)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제11장 규율과 상벌

제59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60조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무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 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 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63조 (성희롱 예방)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3항,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장 납입금

제64조 (납입금) ①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습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 (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6조 (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그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의 2 (납입금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 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납부한 수업료의 반환 여부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66조의 3 (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 11조②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세부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장 장학금

제67조 (장학금) ①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 성적이 평균 B°급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 성적이 평균 C°급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3. 기타 장학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 제14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68조 (교수회 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강사 이상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69조 (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2.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0조 (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교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1조 (자체 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 (제 위원회) ①본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학생지도·장학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73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 (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5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 (심의)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7조 (공포절차 및 공포) 제·개정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 후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다.

##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78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부속기관
  - 도서관(교무처)
  - 정보전산원(기획실)
  - 국제교육원
  - 평생교육원
2. 부설연구소
  - 디자인연구소
  - 김포발전연구소
  - 식품개발연구소
  - 지역환경연구소( 부설기관으로 “환경보건연수원”을 둔다.)
  - 부동산경영연구소

②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장 보 칙

제79조 (시행 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 1. 학과 신설 : 컴퓨터응용과 80명(주간40 야간40) 멀티미디어과 80명(주간 40 야간40)  
2. 정원변경: 전자과 야간 40명, 전자계산과 야간 40명, 정보통신과 야간 40명 증원

## 부 칙

제1조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 1. 학과신설 : 컴퓨터네트워크과 80명(주40 야40), 실무영어과 80명(주40 야40)  
2. 정원변경: 컴퓨터계열 야간 40명, 환경공업과 야간 40명, 전자출판과 야간 40명, 세무회계과 야간 40명, 실내디자인과 야간 40명 증원

제3조 (학과명칭 개정에 따른 학생 경과조치) 컴퓨터계열 신설로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계산과, 컴퓨터응용과, 멀티미디어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못 하는 자는 개편된 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김포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김포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는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 1. 학과신설 : 호텔조리과 80명(주40 야40), 경영정보과 80명(주40 야40), 의상디자인과 80명(주40 야40), 생활음악과 80명(주40 야40)  
2. 정원변경: 컴퓨터계열, 전자출판과, 세무회계과 야간40명을 각각 주간40명으로 조정  
제3조 (학과명칭 개정에 따른 학생 경과조치) 전자정보계열, 환경토목과 명칭변경으로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과, 정보통신과, 컴퓨터네트워크과, 환경공업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년도 말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는 개편된 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 학과신설: 시각디자인과 80명(주40 야40)

제3조 (학과명칭 개정에 따른 학생 경과 조치) 패션디자인과 학과명칭 개정으로 이 학칙 시행 당시 의상디자인과 재적생은 종전에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 정원변경: 환경토목과 야간 40명을 주간으로 조정

제3조 (학과명칭 개정에 따른 학생 경과조치) 디지털출판과, 세무회계정보과 학과명칭 개정으로 이 학칙 시행 당시 전자출판과 세무회계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2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 정원변경: 3년제 시행에 따른 정원감소 컴퓨터계열 주간 18명, 유아교육과 주간2명, 실내디자인과 주간 4명 감원

제3조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학생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① 종전 2년제 학과를 3년제 학과로 연장·운영한다는 것은 종전의 2년제 학과는 폐지되고 3년제 학과가 새로 신설되는 의미로 본다.

②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하여 제적, 자퇴 등으로 재입학하는 경우는 개편된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③ 2년제 과정으로 입학 후 군입대 및 기타의 사유로 휴학하였다가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개편된 수업연한을 적용하되 해당 학생이 수업연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 부 칙

제1조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개정에 따른 학생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디지털출판과 시각디자인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년도 말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단, 디지털출판과로 입학한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변경)

1. 계열신설 : 경영계열(주간 : 200명, 야간:120명)

2. 학과명 변경 : 전자정보계열 - 정보통신계열, 환경토목과-환경시스템과, 세무회계정보과-경영계열 세무회계정보전공, 경영정보과-경영계열 경영정보전공

3. 정원변경:

· 정원감축-정보통신계열 주간 40명, 야간 40명, 환경시스템과 야간 40명 감원

· 3년제시행에 따른 정원감소 컴퓨터계열 야간 40명, 유아교육과 주간4명, 실내디자인과 야간8명 감원

제3조(학과 명칭에 따른 학생 경과조치) 1. 경영계열 신설로 이 학칙 시행당시 세무회계정보과, 경영정보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는 개편된 계열의 소속으로 본다.

2. 정보통신계열, 환경시스템과 명칭 변경으로 이 학칙 시행당시 전자정보계열. 환경토목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는 개편된 계열 및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설치학과 및 명칭변경) 계열에서 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정보통신계열-정보통신과, 컴퓨터네트워크과, 컴퓨터계열:인터넷정보과, 멀티미디어과, 경영계열에서 학과로 : 세무회계정보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부동산경영과, 신설학과 : 호텔외식경영과, e-비즈니스과, 학과명칭변경: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를 시각디자인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설치학과 및 명칭변경)

- 1.학과명 신설 및 변경: 건설정보과와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영상디자인과를 영상미디어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2. 산업체 반을 제외한 일반학과의 야간반을 폐지하고, 정보통신 100, 컴퓨터네트워크 90, 환경시스템 60, 건설정보 40, 세무회계정보 80, 경영정보 70, 부동산경영 70, e-비즈니스 70, 관광영어 80, 호텔조리 120, 호텔외식경영 80, 사회복지 90, 실내디자인 120, 패션디자인 80, 시각디자인 60, 영상미디어 60, 생활음악 120명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설치학과 및 명칭변경)

- 1.학과명 변경: 컴퓨터네트워크과를 유비쿼터스IT과로 환경시스템과를 환경보건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 2.학위명칭 변경: 유비쿼터스IT과의 학위명칭을 유비쿼터스IT전문학사로, 관광영어과의 학위명칭을 언어전문학사에서 관광영어전문학사 학위명칭을 변경한다.

##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제66조의 2(납입금의 반환) ①의 5호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제66조의 3(등록금심의위원회)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제적) ①의 2, 3호는 2011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학과 및 명칭변경)

1. 학과명 신설 및 변경: 보건행정과, 경찰행정과,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 환경보건과를 보건환경과로, 건설정보과를 건설토목과로, 호텔외식경영과를 호텔외식산업과로, 실내디자인과를 실내건축디자인과로, 생활음악과를 공연예술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2. 인터넷정보 70, 멀티미디어 70, 항공전기전자 40, 부동산경영 50, e-비즈니스 65, 관광영어 70, 관광경영 60, 실내건축디자인 70, 패션디자인 60, 공연예술 60명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별지 제1호】

제 호

## 학 위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  
정을 이수하고 ○○○○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김포대학총장**  
(23년제 과정)

학위번호 : 김포대 - 연도 - 일련번호

【별지 제2호】

제 호

## 수 료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  
정을 이수하였기에 이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김포대학총장  
(23년제 과정)

【별표 제1호】

### 학과별 전문학사 학위명칭

학 과	학 위 명 칭	학 과	학 위 명 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전문학사	호텔외식산업과	호텔경영전문학사
유비쿼터스IT과	유비쿼터스IT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문학사
인터넷정보과	전산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멀티미디어과	전산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문학사
보건환경과	환경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건설토목과	토목전문학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전문학사
항공전기전자과	항공전기전자전문학사	경찰행정과	경찰행정전문학사
세무회계정보과	세무회계정보전문학사	아동보육과	아동보육전문학사
경영정보과	경영정보전문학사	실내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부동산경영과	부동산경영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의상전문학사
e-비즈니스과	e-비즈니스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디자인전문학사
관광영어과	관광영어전문학사	영상미디어과	영상전문학사
관광경영과	관광경영전문학사	공연예술과	음악전문학사
호텔조리과	조리전문학사	-	
<b>학 과 수</b>		<b>총 25개과</b>	

【별표 제2호】

## 김포대학 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사항

1. 계약학과 명칭 : ○○과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4. 학생의 정원
5. 운영경비
6. 납입금
7. 수업운영
8. 설치 및 교육기간 신설